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불과 2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관리는 200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정부주도의 굵직한 사업을 통해 경이적인 재활용실적을 거두었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음.
- 재활용분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능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이 지닌 능력과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현재 폐기물처리업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격무를 대신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음.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이 스스로 자원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함.

2. 연구 목적

- 폐기물 성상과 기술의 변화추세를 토대로 향후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자원화사업의 영역을 확인함.
- 정체된 재활용사업을 새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의 민관협력모델을 구상하고 기존 형태와의 차이를 평가함.
-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의 실행에 필요한 시행틀을 마련하고 저변정비사항을 제시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 생활폐기물관리 분야의 민간기업 활용실태 조사 :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 실태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미국 및 유럽국가의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
- 재활용이 신장될 수 있는 영역 확인 : 분리축진, 처리경로 개선, 공공시설의 자원회수기능 강화, 수거망 확대, 새로운 자원화 영역 구축 등으로 구분하고 신장가능성과 가치를 평가
- 자원회수축진형 민관협력모델 구상 : 민간기업이 담당해야 할 분야와 역할을 제시한 후 민관협력모형을 구상하며, 현재 시행 중인 모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모형의 특성을 평가
-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시행방안 강구 : 새로운 모형의 시행틀을 정하고 시행틀의 적용에 장애가 되는 기존 제도와 규범의 개선방안을 마련
- 관련 분야의 의견 수렴 :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현장 적용가능성, 특성 및 시행틀 등의 분석과 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야의 관계 공무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업체,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업체,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II. 주요 결과

1. 우리나라는 각종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활용

-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같은 단순업무영역은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소각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시설운영도 민간기업에 위탁함.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사를 통하여 운영함.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은 민간기업에게 위탁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민간기업이 주도함.
- 재활용품은 민간시장의 무상수거가 활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도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수행함.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은 민간기업 고유의 영역임.
- 대형폐기물의 수거에는 공공조직(민간위탁 포함), 생산자, 민간기업 모두가 참여함. 소형가전제품은 서울재활용센터(서울시 소유)에서, 생산자가 수거한 폐제품은 수도권재활용센터(생산자 소유)에서 재질별로 분해하여 재활용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판매함. 중고품판매시설과 재활용센터는 대부분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임.

2. 지역에 따라 민간기업의 활용도는 상이

- 강북구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세분하여 민간기업에 위탁하며,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형태로 민간기업을 활용함.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 가로청소, 매립지 관리, 수수료 징수 등 대부분의 생활폐기물관리 업무를 대행함.
- 독일 등 유럽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직접 또는 공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유럽연합(EU)이 처리분야의 전부 혹은 가능한 범위의 수거분야를 민간시장에 개방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민간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 그러나 유럽지역에서는 경쟁입찰의 심화로 업체의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함.

3. 기존 재활용품, 소형가전제품, 폐의류는 분리배출의 촉진을 통해 자원으로 회수 증대 가능

- 서울에서 소각이나 매립에 의해 처리되는 혼합폐기물 중 재활용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양은 21%에 이릅니다.
- 다량의 소형가전제품이 혼합폐기물 처리경로로 배출되거나 옥내에 보관되는 실정이며, 처리기반도 부족함.
-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의류의 양이 1일 263톤으로 막대함.

4. 종이팩은 수거경로 개선으로 회수량의 증대 가능

- 종이팩은 매우 소중한 화장지 원료이지만 일반종이와 섞이게 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오히려 자원만 낭비함.
-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종이팩의 82%는 수거경로 개선을 통해서 자원화될 여지가 큼.

5. 공공기반시설의 자원회수기능 강화가 시급

- 공공재활용선별장은 폐종이팩을 가려내고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여 자원회수의 효율을 높이며, 재활용품 회수율 향상으로 판매수입도 늘림.
-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바이오가스과 퇴비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방식을 지향함. 새로 건설되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와 분뇨 등에서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수단으로 디스포저(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활용해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

- 서울시 종량제봉투에 담긴 혼합폐기물 중 36.3%가 고행연료(RDF : Refuse Drived Fuels) 성분이어서 가연성폐기물을 고행연료로 전환하면 쓰레기매립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음.
- 혼합폐기물에서의 가스분해 기술은 에너지회수 극대화와 오염물질 생성 최소화 등 현재의 기술보다 우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향후 새로운 시설을 확보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6.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적절한 회수가 절실

-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재활용가치 측면보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추세임.
-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중 처리를 위해 회수된 양은 각각 28%와 10%에 불과함.

7. 폐식용유와 폐판유리 등은 새로운 자원화 영역

-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시장가치가 매우 높으나 주택에서는 사용량의 58%가 하수구 투입, 종량제봉투 투입 등의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배출되고 있어 주택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에 대한 수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유리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유리용기를 제외하고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유럽에서 폐판유리의 재활용사업이 전개됨. 막대한 양의 건물 폐유리, 폐자동차 유리 등은 향후 자원화가 시급한 대상임.

Ⅲ. 정책건의

1. 현재의 생활폐기물관리 업무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등은 민간위탁에 적합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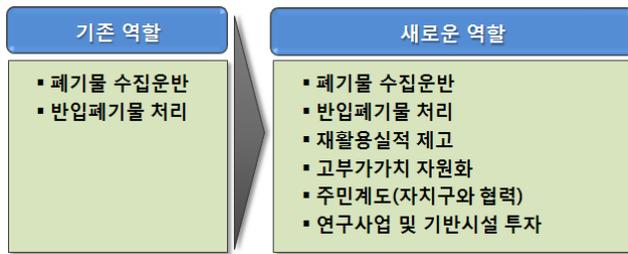
- 유기물의 수거, 재활용제품 생산, RDF 사용시설 운영 등은 시장성이 충분해 민간기업의 영역으로 적합함.
- 음료수 등의 포장용기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등은 국가자원의 바른 활용측면에서 생산자의 역할로 타당함.
-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등은 수수료의 징수가 어렵고 민간기업이 다른 분야에서 파업하거나 태업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함.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단순업무, 처리시설 운영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함.

〈표 1〉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 결과

종류 \ 처리단계	수집운반	처리	생산유통
혼합폐기물	(직영 적환장 이용)	소각시설, 매립시설	RDF 제조시설
음식물쓰레기	(직영 적환장 이용)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재활용품	정부는 분리배출 독려 (직영 적환장 이용)	분해선별시설, 재활용선별장	
가로쓰레기		소각시설, 매립시설	
대형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잔재물 처리	
소형가전제품	재활용품과 함께 수거 (직영 집하장 이용)	분해선별시설, S/R센터	
폐종이팩	재활용품과 함께 수거 (직영 집하장 이용)		
폐의류	재활용품과 함께 수거 (직영 집하장 이용)		

2.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에서 폐기물처리업은 스스로 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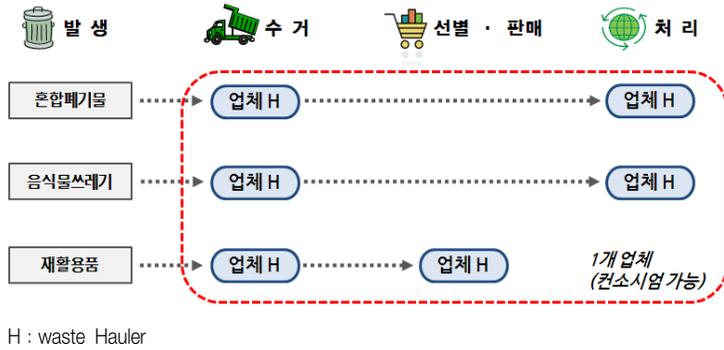
-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 등 단순업무와 처리시설 운영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에서는 재활용실적 제고, 고부가가치 자원화, 주민계도, 연구사업 및 기반시설 투자 등 전통적인 행정 분야에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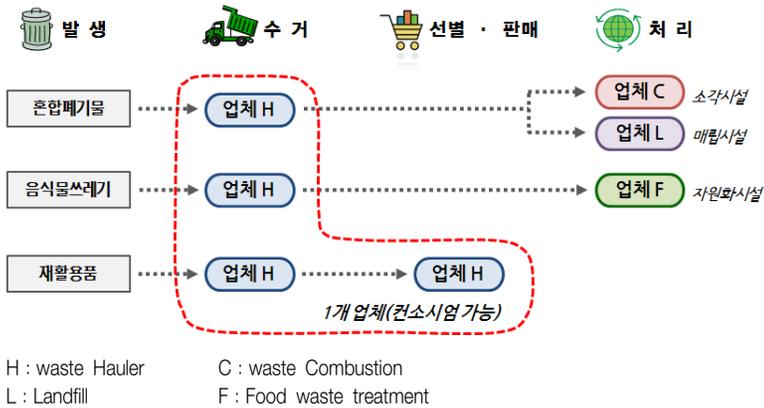
〈그림 1〉 폐기물처리업의 새로운 역할 모식도

3. 자원이수축진형 민관협력형태로 「수거처리일체형」과 「수거처리 분리형」의 두 가지 모형을 설정

- 「수거처리일체형」은 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 선별, 처리업무를 1개 민간기업에 전담시키는 모형으로, 재활용목표의 달성과 함께 고부가가치 자원화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책무가 부여됨.
- 「수거처리분리형」은 혼합폐기물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판매를 1개의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고, 혼합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민간기업에 운영위탁하거나 민간기업 보유 시설에 위탁하는 모형임. 재활용목표 달성 임무는 수집운반업체에게 부여됨.



〈그림 2〉 「수거처리일체형」 민관협력 모형 개념도



〈그림 3〉 「수거처리분리형」 민관협력 모형 개념도

4. 「수거처리일체형」과 「수거처리분리형」은 장단점이 공존하며, 단점은 시행들을 통해 보완

- 「수거처리일체형」과 「수거처리분리형」은 민간기업에게 재활용, 고부가가치 자원화 등 뚜렷한 목표부여가 쉽고 모든 배출원에 동등한 수거서비스가 제공되며 행정인력을 줄일 수 있는(Y자치구의 경우 22% 감축 가능) 장점이 있으나 수직적인 하도급 관계 형성, 일부 기업의 독점 등 민간기

업 측면에서의 단점도 존재함. 이러한 단점은 시행틀을 통하여 보완함.

〈표 2〉 민관협력모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수거처리일체형	지방자치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 자원화 목표부여 용이 2. 균등한 서비스 제공 3. 위탁업체 선정·관리 수요 감소 4. 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감소 5. 폐기물관리 행정수요 대폭 감소 6. 폐기물관리비용 총체적 절감 7. 처리시설 건설재원 집중소요 완화 8. 폐기물관리 재정운용의 투명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이외의 사항 요구 곤란 등 관리감 독권 약화 2. 처리경로 추적 곤란 3. 타 지방폐기물 유입 갈등 심화 4. 공공처리시설 확보 기피 5. 현장 적용 불확실
	민간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재량권 확보로 책임운영 가능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본육성 가능 3. 기술개발 및 재투자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형회사 주도로 소형회사 사멸 2. 수직적 하도급 관계 형성 3. 규모확대로 노동조합 강성화 4. 업체 간 경쟁 가중으로 시장 불안
수거처리분리형	지방자치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목표부여 용이 2. 균등한 서비스 제공 3. 수거업체 선정·관리 수요 감소 4. 폐기물관리 행정수요 감소 5. 폐기물관리비용 절감 6. 폐기물관리 재정운용의 투명화 7. 높은 현장 적용 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업체 선정·관리 수요 증가 2. 처리시설 운영부담 증가 3. 일부 수거기업 독점 가능
	민간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수거) 2. 전문분야 특화(수거, 처리) 3. 기술개발 및 재투자(수거,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처리기업으로 성장 제한

5.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실행을 위해 모형에 맞는 시행틀 마련

- 「수거처리일체형」을 시행하기 위해 『폐기물 종합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처리업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구축함.
-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영업, 투자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3년)을 보장하고 업무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최대 2회의 계약연장(3년씩 6년)을 추진함(외국 5~10년).

- 주민만족도, 재활용실적, 탄소배출저감실적, 수익창출실적 등을 인센티브, 패널티, 계약연장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배출자로부터의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실적(예 1톤당)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여 인센티브, 패널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토대를 마련함.
- 민간기업을 선정할 때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처리위탁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표 3〉 민관협력모형에 따른 시행틀

구분	수거처리일체형	수거처리분리형
폐기물 처리업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폐기물 수거처리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 재활용품 수거선별판매 ○ 재활용물 제고 ○ 고부가가치 자원화 추진 ○ 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 폐기물 성상파악 및 실적관리 	<p>【수집운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 재활용품 선별판매 ○ 재활용물 제고 ○ 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 폐기물 성상파악 <p>【중간, 최종처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적정처리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종합관리업 *타 업종과 컨소시엄 가능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기타 관련법에 의한 허가업 포함), 폐기물 최종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에게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판매, 재활용물 제고 업무를 부여하고 동일업종 및 재활용선별업종과 컨소시엄 가능 ○ 폐기물 중간처리업(기타 관련법에 의한 허가업 포함) ○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이동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가 지정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선별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 기타 유관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경로추적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지정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선별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 기타 유관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관리업 : 3년 - 우수업체 2회 연장으로 최대 9년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운반업 : 3년 - 우수업체 2회 연장으로 최대 9년까지 가능 ○ 민간시설 처리위탁 : 3년 ○ 공공시설 운영위탁 : 3년 - 우수업체 1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 ○ 민간투자시설 운영 : 협상 계약기간

〈표 계속〉 민관협력모형에 따른 시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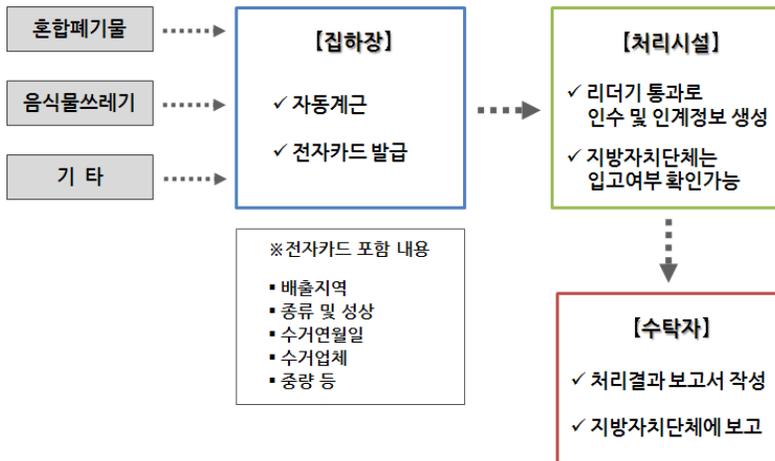
구분	수거처리일체형	수거처리분리형
업무이행 실적평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실태 및 주민만족도 · 재활용실적(탄소저감실적 포함) · 수익창출실적 ○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실태 및 주민만족도 → 계약연장 · 재활용실적 → 계약연장, 패널티 · 수익창출실적 →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수집운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실태 및 주민만족도 · 재활용실적 · 수익창출실적 ○ 평가항목(공공시설 위탁운영자,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선실적 · 수익창출실적 ○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실태 및 주민만족도 → 계약연장 · 재활용실적 → 계약연장, 패널티 · 수익창출실적 → 인센티브 · 운영개선실적 → 계약연장(공공시설 위탁운영자)
대가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관리업 : 단가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징수 · 각종 판매수입 지방자치단체 귀속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업종 : 단가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징수 · 각종 판매수입 지방자치단체 귀속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극 활용
위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입찰 : 수행능력, 입찰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수탁자의 수 : 자치구당 1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입찰 : 수행능력, 입찰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운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시설 운영위탁 · 공공시설 운영위탁 ○ 공개경쟁입찰 : 입찰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위탁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심사평가위원회 운영

6. 시행들은 법규 정비 등 여러 저변의 개선을 통해 구체화

- 「수거처리일체형」을 시행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항에 『폐기물 종합관리업』(가칭)을 신설하고 컨소시엄 등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표 4> 참조).
-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이용한 경로추적시스템을 구축함(<그림 4> 참조).

〈표 4〉 「수거처리일체형」을 위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

구분	현재	개정(안)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동일) (추가) 5. 폐기물 종합관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을 하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폐기물 자원화계획 수립 및 집행, 교육·홍보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동일) (추가) 4. 폐기물 종합관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일부를 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하거나 타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이행기업군(소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림 4〉 RFID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경로추적시스템(안)

- 위탁계약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약기간 3년에 1~2회의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서조건을 부여함.

〈표 5〉 사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기간 정비방안

구분	현재	개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동일)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폐기를 처리업에 대해서는 업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2회 이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 민간기업의 청소실태 및 주민만족도, 재활용 실적, 수익창출 실적 등을 주요 항목으로 업무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계약연장 여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6〉 생활폐기물관리 민간기업 업무이행실적 평가항목

영역	분야	내 용
대행사업자로서 업무이행	청소실태	▪ 청소누락 또는 쓰레기 미수거
	주민만족도	▪ 청소서비스 신속성, 청결도, 쾌적성, 안전성
	재활용률 제고	▪ 재활용실적 *제안서 목표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정목표 대비 실적
	고부가가치 자원화	▪ 탄소배출량 *제안서 목표 대비 실적 *폐기물 종합관리업에만 적용
	수익창출	▪ 수익창출실적 *제안서 목표 대비 실적

〈표 계속〉 생활폐기물관리 민간기업 업무이행실적 평가항목

영역	분야	내 용
공공사업자로서 기반 및 체계	시설물관리	▪ 처리시설, 차량, 적환장, 차고지, 수거용기 등
	품위유지	▪ 복장, 불법금품수수 등
	민원처리	▪ 책임민원 건수, 민원처리실적 등
	청소구역관리	▪ 순찰반, 기동반 운영 등
	법규 준수	▪ 폐기물관리법, 교통법규,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건수 등
	구정 협력도	▪ 지시사항 이행, 홍보 등
영리기업으로서 조직운영	인력장비관리체계	▪ 작업일지, 작업평가, 운전일지, 수리일지 등
	전문성 확보	▪ 기술제안 실적, 기술자 채용, 전문분야 교육 등
	복리후생	▪ 임금수준, 복지, 이직, 사고, 파업 등
	경영마인드	▪ 인식(업무, 종업원, 공공사업), 미래비전

-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수행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종합하여 평가함.

〈표 7〉 위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예

심사항목	점수	내용
계	100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종합평가
수행능력	70	사업내용, 이행실적, 경영상태 종합평가
사업내용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만족도를 고려한 수거계획 ◦ 자치단체 제시 또는 제안목표 달성을 위한 재활용계획 ◦ 고부가가치 또는 저탄소배출형 자원화 및 처리계획 ◦ 수익창출 계획
이행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실적 ◦ 처리시설 및 장비 보유실태
경영상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규모 ◦ 신용도 ◦ 재무구조
입찰가격	30	예정가격의 82.995% 이상 *건설폐기물처리용역(환경부 고시 제2007-116호, 2007. 7.27) 참조

-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금융비용을 포함한 20% 이내의 투자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보장 또는 금융비용을 제외한 10% 이내의 투자수익률 보장 등 기타여건들의 정비도 필요함.

〈표 8〉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시행을 위한 기타여건

수거처리일체형	수거처리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민간처리시설 확보 ○ 쉬운 처리시설 확보 여건 ○ 적정 이윤 보장 ○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 ○ 시민의 수수료 부담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공공처리시설 확보 ○ 공공시설에 민간투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이윤 보장 + 지자체 부지 제공 ○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시민의 수수료 부담 수용

7. 새로운 모형의 시행을 위해 단계적 접근 필요

- 현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집운반업의 영업방법(컨소시엄 가능 등) 변경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수거처리분리형」을 먼저 추진함. 이를 위해 서울시는 수집운반업의 영업방법 변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자치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업무 민간위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함.
- 「수거처리분리형」, 민관협력모형에서 저탄소배출형 또는 고부가가치 자원화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혐기성소화시설, 혼합폐기물의 고형연료화시설 또는 열분해시설 등 대체에너지를 회수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시설의 확보에 노력하며, 재정부담 완화와 우수기술 선택 그리고 운영 전문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함.
- 「수거처리분리형」을 시행하면서 「수거처리일체형」의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먼저 서울시는 『폐기물종합관리업』의 신설을 건의함.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변경도 필요함. 민간부분은 꾸준히 폐기물처리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함. 서울시는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 또한 『수거처리분리형』에 적합한 『폐기물관리업무 민간위탁 매뉴얼』을 작성해 자치구에 배 포함.